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토론

2020. 1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기본원칙에 관하여

- 합법성, 비례성, 보충성 – 정보수집의 요건과 범위는? 안심밴드와 기지국조사의 요건은?
 - 이러한 제한은 국제 인권 기준 등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규약이 보호하는 권리의 본질과 양립 가능하여야 하며,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엄격하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1항에 따라 이러한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한다. 즉, 몇 가지 종류의 제한이 이용 가능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대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8-29문단)
- 비차별과 참여의 원칙 – 정보공개로 발생하는 차별의 금지와 시민참여의 보장은?
 -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는 공동체, 국가 및 국제 차원의 모든 건강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이다.”(사회권 규약 일반논평14,11문단)
 - “국가 보건 전략 및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특히 비차별과 국민 참여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 및 집단이 그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제12조상의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발된 정책, 프로그램 또는 전략의 필수적 구성요소이어야 한다.”(사회권 규약 일반논평14, 43문단)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기본원칙에 관하여

-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 코비드-19 대응책의 일환으로 감시용 신기술에 대한 (1)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 제한된 용도 및 (3) 충분한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가 이에 해당된다. -역학조사시스템에 대한 안전장치는?
- 감시와 모니터링은 그 기간과 범위 또한 제한적이어야 한다.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는? 보관,공개기간은?

- 일반논평 14

- (...) 공중보건의 보호를 근거로 한 제한이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제한되어야 하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기구는?
-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및 실현(촉진, 제공, 증진)할 의무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보호, 실현은?
 - 존중: 권리 실현에 대한 간섭 금지
 - 보호: 제3자로부터 보호
 - 실현: 권리 실현을 위한 적절한 입법, 행정, 예산, 사법, 홍보 및 기타 조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기본원칙에 관하여

- 정보인권의 보장의 의미 – **정보인권을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정보인권의 존중 –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엄격한 준수, 기간과 범위의 제한, 심사
 - 정보인권의 보호와 실현 – 안전장치의 마련, 심사, 보상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구축, 참여권의 보장
 - “본 위원회는 이 권리가 국가 당국에 의한 것이건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것이건, 모든 간섭 및 비난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 조항은 당사국에 그러한 간섭 및 비난을 금지하고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부과한다.**”(자유권 규약 일반논평 16, 1문단)
 - “자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자동 정보 파일(AUTOMATIC DATA FILES)에 저장되었는지, **저장된다면 어떠한 정보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저장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개인은 또한 어떤 공공기관 또는 개인 또는 사설 단체가 그들의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파일이 부정확한 개인 자료를 포함하거나 또는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 처리되었을 경우 모든 **개인에게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자유권 규약 일반논평 16, 10문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제안에 관한 의견

- 1. 의심자의 정의 (개정안 제2조 제15의2호) 관련 –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에 동의함
 - (강제적) 정보수집의 대상 범위는 비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
 - 가령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접촉을 하였을 때'(WHO, 2020. 3. 20.)
 - 다만 호흡기 질환 외에 감염병을 염두에 둔다는 취지로 '일정한 거리 내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문구를 수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공유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관하여

- 2. 동선공개의 요건(개정안 제34조의2 제1항) 관련 –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에 동의함
 - **보호의무:** 동선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 및 사생활의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
 - **비례성의 준수:** 방법의 제한, 공개의 대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민감정보의 제외는 것이 타당
 -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개가 강제되는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지득(知得), 외부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07. 5. 31. 2005헌마1139 결정)
 - 다만, 동선공개의 일시성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지, 방법을 일원화 한 이상 분산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 의견을 공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관하여

- 2. 동선공개요건의 요건(개정안 제34조의2 제1항) 관련 –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에 동의함
 - 보호의무 충족 차원에서 공개의 대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민감정보의 제외는 것이 타당하며,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 비례성의 준수 차원에서: 방법의 제한,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개가 강제되는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지득(知得), 외부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07. 5. 31. 2005헌마1139 결정)
 - 다만, 동선공개의 일시성을 방법에 반영하면 어떨지와 토론거리와 관련 방법을 일원화 한 이상 분산하여 공개하도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라는 의견을 공유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관하여

- 3. 위치정보 수집의 요건(개정안 제76조의2 제2항) 관련 –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에 동의함
 - 위치정보가 사생활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특히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해당 조항이 기지국 정보수집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 제76조의2 제8항은 제6항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임
 - 토론 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므로 익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만약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같은 문제가 다른 재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관하여

- **4. 감염병 예방조치 관련 –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에 동의함**
 - 다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 라는 요건을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할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유함
- **5.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및 관리감독 관련**
 -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가 크게 드러난 만큼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함. 다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평가,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어야 할지 고민이 있음

감독기구에 관하여

- 감독기구의 필요성

- 정보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추진이 감염병의 특성상 급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행정조치 역시 즉시강제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를 감시하고 평가할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포괄적인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의 법제 내에서도 재난상황에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인권 현안에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
- 무엇보다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해외의 경우: 지역인권규범을 통한 감독 / 국가인권기구를 통한 감독

감독기구에 관하여

- **입법 방안:** 감염병예방법 개정, 감독기구 관련 법률 개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특별히 규정하는 방안**
 -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개입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그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 **질병관리청 산하에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EX) 예방접종피해조사반(감염병예방법 제30조)**
 -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기관 산하 위원회(미국), 특정 영역에 대한 옴부즈만, 인권보호관 제도(프랑스),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감독기구를 별도로 두는 방안**
 -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감독기구에 관하여

- 참고: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3조(피해자와 시민의 참여) ① 국가 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해구호법」 제5조의 재해구호계획,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의 안전교육기본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안전 관련 계획·지침 등을 수립·시행할 때에 각 계획안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① 국가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조사기구(이하 “독립 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립 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16조 및 제17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감독기구에 관하여

- 감독기구의 직무 및 권한
 - 방역 조치로 침해되는 인권의 보호와 구제
 - 인권침해와 관련된 실태 조사
 -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관한 시책 마련
 - 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정책추진에 있어 사전 협의권 및 사후 조사권 보장
 -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인권침해방지 및 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연구 등
 - 국제협력